

〈별표83-1〉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

약관에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에서 [별첨3]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명 및 수술명을 말합니다.

〈중증도 기준〉

구분	상병명	상병코드
1	머리 및 목의 2도 화상	T20.2
	몸통의 2도 화상	T21.2
	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	T22.2
	손목 및 손의 2도 화상	T23.2
	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	T24.2
	발목 및 발의 2도 화상	T25.2
	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	T30.2
2	머리 및 목의 3도 화상	T20.3
	몸통의 3도 화상	T21.3
	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	T22.3
	손목 및 손의 3도 화상	T23.3
	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	T24.3
	발목 및 발의 3도 화상	T25.3
	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	T30.3
3	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	T20.3
	몸통의 3도 화상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	T21.3
	손목 및 손의 3도 화상	T23.3
	발목 및 발의 3도 화상	T25.3
	눈 및 부속기의 화상	T26.0~T26.4
4	호흡기도의 화상	T27.0~T27.3
	기타 내부기관의 화상	T28.0~T28.3

주) 향후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.

〈체표면적 기준〉

구분	상병명	상병코드
1	신체표면의 20~29%를 침범한 화상	T31.2
	신체표면의 30~39%를 침범한 화상	T31.3
	신체표면의 40~49%를 침범한 화상	T31.4
	신체표면의 50~59%를 침범한 화상	T31.5
	신체표면의 60~69%를 침범한 화상	T31.6
	신체표면의 70~79%를 침범한 화상	T31.7
	신체표면의 80~89%를 침범한 화상	T31.8
	신체표면의 90%이상을 침범한 화상	T31.9
2	신체표면의 10~19%를 침범한 화상	T31.1
	신체표면의 20~29%를 침범한 화상	T31.2
	신체표면의 30~39%를 침범한 화상	T31.3
	신체표면의 40~49%를 침범한 화상	T31.4
	신체표면의 50~59%를 침범한 화상	T31.5
	신체표면의 60~69%를 침범한 화상	T31.6
	신체표면의 70~79%를 침범한 화상	T31.7
	신체표면의 80~89%를 침범한 화상	T31.8
	신체표면의 90%이상을 침범한 화상	T31.9

주) 향후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.

〈수술명 및 수술코드〉

구분	수술명	수술코드
1	반흔구축성형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	N0241
2	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	N0242
		N0243
		N0244
		N0245
		N0246
		N0247
		NA241
		NA242
		NA243
3	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	N0249

주) 향후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.